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1일 18시 10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수도공사 대행 지정 취소	3

수도공사 대행 지정 취소

2014.04.17 조회수 1282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17
담당부서	수도행정과
상위법령	수도법 제38조
규칙	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20조
유형	2호 -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등록사유	국토도시개발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0-12-22
규제시행/폐지일	2000-12-22
규제내용	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1.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 2.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3.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할 때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14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18 >

Yeosu Web Contents

